

의안번호	2211651
의 퇴 인	이수진 의원
회 답 일	2025. 8. 11.
추 계 번호	25C3899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① 군복무크레딧 지원 기간을 12개월에서 실제 의무복무기간으로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063년부터 2072년까지 5조 5,326억원(연평균 5,533억원)으로 추계되고, ②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50%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조 6,576억원(연평균 3,315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(1): 2063~2072년

(단위: 억원)

	2063	2064	2065	2066	2067	합 계	연평균
군복무크레딧 지원 (안 제18조)	1,056	2,097	3,156	4,197	5,157	55,326	5,533
	2068	2069	2070	2071	2072		
	6,092	7,033	7,937	8,837	9,765		

주: 1. 추계기간은 전망모형상 개정안에 따른 크레딧 산입기간 확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2063년(2026년 병역의무 수행 완료자가 조기노령연금수급권을 획득하는 시점)부터 2072년까지 10년으로 설정

2. 2025년 불변가격 기준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(2)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보험료 지원 (안 제100조의6)	2,445	2,825	3,258	3,747	4,302	16,576	3,315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법률 제20903호 안 제18조(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)	「병역법」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(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A값의 50%를 적용하도록 한 현행법 유지) ※(현행) 「병역법」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경우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(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A값의 50%를 적용) ※(법률 제20903호, 2026.1.1. 시행) 최대 12개월 산입	의무규정
2	안 제100조의5(육아휴 직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)	국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해당 기간 연금보험료의 50%를 지원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8조(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)	○	○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활용 하여 추계
2	안 제100조의5(육아휴직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)	○	○ 2021~2024년의 육아휴직급여 수급 현황을 참고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
정법률은 2026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하되, 추계기간은 재정수반
요인별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설정

- (군복무크레딧) 개정안 부칙은 법률 시행 이후 병역의무를 완료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모형상 개정법률 시행 시점인 2026년에 23세(평균 입대 연령인 21세 + 평균 병역의무 수행 기간인 18.7개월)인 가입자가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획득이 가능한 시점(60세)에 도달하는 2063년부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
 - 추계기간이 장기이고 연금급여가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지급되므로 2025년 기준 불변가격¹⁾으로 제시
- (육아휴직자 연금보험료 지원) 개정안 부칙은 법률 시행 이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터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개정법률 시행 시점인 2026년부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군복무크레딧 지원(안 제18조)

- (군복무크레딧 대상자 수)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전망모형에 연도별 국민연금 가입률과 사망률 및 장애발생률, 연령별 조기노령연금 수급률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노령연금 수급권자 수에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비율을 적용하여 대상자 수를 산출
 - 개정안에 따른 군복무크레딧 대상자는 현역병²⁾, 전환복무요원, 상근예비역, 사회복무요원이며, 2025년부터 병역의무를 완료하는 사람부터 개정규정 적용
 - (군 입대 연령) 병무청 제출자료에 따른 2024년 군복무크레딧 대상 병역의 평균 입대 연령인 21세 가정
 - (입대자 비율) 2013년 18세에서 시작하여 2024년 29세에 도달한 사람 중 군복무크레딧 대상이 되는 병역으로 입대한 사람 수(30.5만명³⁾)의 2024년 29세 남성 인구(37.2만명⁴⁾) 대비 비율(82.0%)을 산출하고, 여기서

1) 불변가격은 GDP디플레이터(2024.10. 기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)로 각 연도 발생금액을 나누어 산출

2) 징집병을 의미함(장기복무로 전환하지 않고 제대한 학군장교 및 학사장교가 군복무크레딧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으나 전체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대비 비율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고려하지 않음)

3) 병무청 제출자료

2022~2024년 제대자 중 6개월 미만 군복무 수행자의 비율(0.5%)을 차감하여 적용

－ 현행법은 6개월 미만 군복무자를 군복무크레딧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

□ (병역의무 수행 기간) 2022~2024년 입대자들의 평균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유지된다고 가정

[표 3]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군복무 기간

(단위: 개월)

연 도	육군 등 ¹⁾	해군 등 ²⁾	공군	사회복무요원	평균 복무기간 ³⁾
2024	18	20	21	21	18.7

주: 1) 육군, 해병대, 상근예비역

2) 해군, 해양경찰

3) 평균 복무기간은 유형별 군 복무기간과 유형별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수(추정치)를 가중평균한 복무기간을 가리킴

자료: 국방부, 병무청, 소방청,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

□ (1인당 평균 연금급여액)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활용하여 노령연금액을 산출하되, 현행제도 유지 시 추가 산입기간은 12개월⁵⁾, 개정안 적용 시 추가 산입기간은 18.7개월이 적용됨

○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은 연령별, 가입기간별 소득지수를 적용하여 연금 수급개시 시점의 연금액을 산출하고, 이후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

□ 추계결과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063년부터 2072년까지 5조 5,326억원(연평균 5,533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63~2072년

(단위: 억원)

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(안 제18조)	2063	2064	2065	2066	2067	합 계	연평균
	1,056	2,097	3,156	4,197	5,157		
	2068	2069	2070	2071	2072		
	6,092	7,033	7,937	8,837	9,765		

주: 1. 추계기간은 전망모형상 개정안에 따른 크레딧 산입기간 확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2063년(2026년 병역의무 수행 완료자가 조기노령연금수급권을 획득하는 시점)부터 2072년까지 10년으로 설정

2. 2025년 불변가격 기준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4) 주민등록인구

5) 법률 제20903호의 규정을 적용

나. 육아휴직자 연금보험료 지원(안 제100조의5)

□ 연간 육아휴직급여 총 지원 개월 수와 평균 통상임금액을 적용하여 추계

-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, 통상임금액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알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액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
 - 안 제100조의5제2항은 연금보험료 지원 시 기준소득월액의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, 향후 결정될 산정 방법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
- 2021~2024년의 육아휴직급여 총 지원 개월 수와 평균 통상임금액 추이가 추계기간 유지된다고 가정

[표 5] 2021~2024년 육아휴직급여 수급 현황

(단위: 개월, 백만원, %)

구 분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 증가율
해당연도 총 지원 개월 수	1,193,637	1,432,416	1,346,124	1,379,222	4.9
평균 통상임금액	2.70	2.81	2.91	3.09	4.6

자료: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

□ 추계결과, 국가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%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조 6,576억원(연평균 3,315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6]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보험료 50%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연간 총 지원 개월 수(개월, A)	1,518,711	1,593,660	1,672,308	1,754,837	1,841,439	-	-
평균 통상임금액(백만원, B)	3.4	3.5	3.7	3.9	4.1	-	-
보험료율(% , C)	10.0	10.5	11.0	11.5	12.0	-	-
추가재정소요 (억원, $A \times B \times C \times 50\%$)	2,445	2,825	3,258	3,747	4,302	16,576	3,31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서의 육아휴직자 보험료 지원의 추재정소요 추계는 통상임금액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것으로, 안 제100조의 5제2항은 연금보험료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, 향후 결정될 산정 방법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